

愛犬保護法令

邊 熱 達

世界歴史의古今을通하여 犬保護法令이 있었다는記錄을寡聞한 탓인지 듣지 못하다가 日本의 動物文學會主宰인 平岩米吉氏의 글을通하여 犬保護法令이 지금으로부터 298年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檄君以來 이런 法이 있었는지 愛犬家는 찾아 볼만하고 研究해 볼 일이다. 日本의 이 法은 매우 嚴한 法令으로서 이 法이 制定되고 嚴格히 施行된 연유는 이러하다. 日本의 德川幕府時代의 第五代將軍(將軍이 統治者다)이었던 綱吉은 西紀 1646年 江戸城(지금의 東京)에서 태어났다. 丙戌年生으로 千支로 “개띠”였다.

그는 學問을 좋아하고 儒教를 崇仰하고 日本의 元祿文化를 色보운 人物이다. 綱吉이가 將軍(統治者)이 된 것은 35歳때(西紀 1680年) 지금부터 298年前이다. 그에게는 德松이란 五歲난 귀여운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다病死하고 말았으며 그 후 後孫을 얻지 못하였다. 그때 義持寺란 절의 高僧 隆光의 獻言이 綱吉將軍의 信條에 合致하였다.

僧 隆光 가라사에 “將軍은 現世에 子孫의 緣이 없는 것은, 過去에 殺生의 懲報이므로 앞으로는 殺生을 禁하고 특히 將軍이 戊年生(개띠)이므로 犬에게 특히 儕懲의 情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易學을 重히 여기고 氣循環의 理致를 믿는 그는 1685年부터 “生類憐みの令”(しようるいあわれのれい)이란 法을 만들었다. 法의 내용은 犬, 馬, 猫, 鳥, 물고기 全部該當된다. 그러나 犬에 對한 法條文이 가장 嚴하고 仔細하였다. 1685年엔 犬, 猫를 빼어서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 1686년엔 馬의 頸리를 말아올리거나 지지지 못하게 하였다. 1687년엔 牛, 馬가 病이 아닌데 머리는 者를 罰하고 이를 申告해 오는 者는 補賞토록 했다. 그리고 기르는 개는 全部 犬戸籍인 登錄簿를 만들었다.

이를 御犬毛付帳이라 했다. 御字를 붙인 것을 보면 最上の 導稱이다. 毛色, 性別, 年齡, 크기, 特徵, 등을 記錄했다. 主人 없이 徘徊하는 개를 “旅犬”이라고 하며 먼저 發見한 사람이 말아서 기르다가 主인이 나타나면 배주도록 했다. 개를 죽인 者는 면곳으로 귀양을 보냈

으며 개가 싸울때 밀리지 않고 방판하면 重罰에 處했다. 1695年부터는 개를 학대하면 死刑에 處하게 하였다. 實로 어마어마한 重刑이다. 이는 人間生命보다 개가 더 優位에 있음이 分明한다. 이러한 嚴한 法令으로 犬公의 數가 점차 增加하여 放犬파 主人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많아지니 이를 收容키 위하여 犬舍建設을 命하여 地域마다 犬舍를 大大的으로 建設하였다.

그리고 飼育費는 市費로 充當하였다. 犬籍簿가 徹底하여 變更事項은 반드시 申告토록 義務化하였으니 人間의 戶籍보다 더 嚴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5年 11月에는 府內의 犬舍總建坪이 16萬坪(現東京都中野四町目)에 이르렀다니 놀라운 事實이 아닐 수 없다. 또한 犬舍建設에 功이 많은 두 사람(良直과 昌尹)에게 白米千石을 각각 褒賞하였다니當時의 愛犬思想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飼育豫算이 많아지므로 이를 市稅金으로 賦課하였다고 한다.

1697年에는 全收容犬數가 四萬八千七百四拾八頭에 이르렀다는 記錄이다. 犬에 對한 一日給食은 白米 三合 간장 200gr, 간풍치 一合分씩 支給했다.

當時 犬保護法令에 對하여, 독일人 醫師 Engelbert Kampfer가 남긴 記錄이 있다. 그는 元祿三年(1690年)四十歳때 日本의 長崎縣에 와서 그 다음해와 다음 다음 해 두번 江戸(東京)를 訪問하였다.

그때 日本의 社會風俗, 動植物 등에 關하여 詳細히 觀察했는데, 그 두번째 訪問때 即 1692年에 그의 腫은 일본人案內者가 큰 개에게 물려 많은 傷處를 입었다. Kampfer는 傷處에 봉태를 감아주며 그 개를 왜 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案내者는 嚴肅한 表情을 지으며 그런 일은 生命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對答했다. 將軍(統治者)이 重히 여기는 개를 때린다거나 죽인다면 死刑을 當하는 法令이 있기 때문이다. Kampfer는 歸國後 日本의 動物保護法令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布告令이 붙은 周圍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가보았더니 內容인즉 最近 개를 죽인 者가 있어 그 犯人을 發見申告한 者는 銀二拾兩의 賞金을

준다는 内容이었다. 綱吉將軍治世에 많은 사람들이 개에문에 嚴한 罰을 받은 것이다. 또 日本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養育되고 있으며 거리마다 개로 充滿되어 사람이 개에게 길을 비켜주고 있으며 개가 사람을 물고 害쳐도 特殊한 官吏가 아니면 개를 罰할 수 없으며 그 官吏라도 直接政府의 命令이 없으면 개에게 손가락 하나 밸 수 없다.

그리고 各町마다 年老하고 病弱한 개를 保護하는 犬舍가 세워져 있으며 아마 어느 時代 어느 나라보다도 이 나라에는 많은 개가 길러지고 있으며 개마다主人은 있으나 其他の 많은 개들이 街路의 아무데나 누어 있어 通行에 支障을 많히 주며 病犬은 特別히 세워진 犬舍에서 看護를 받으며 즉으면 山에 묻어서 장사지낸다. 누구도 개를 괴롭힌다거나 개에게 욕을 할 수 없다. 어떤 境遇에도 개에게 危害를 加하면 重罰을 받게 된다.

이러한 嚴한 犬保護는 皇帝(Kampfer는 將軍을 皇帝라 썼다)가 개띠(戊生)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記述하였다. 日本人들의 愛犬思想이 至極한 것도 이때부터 비롯된 것 같다. 그리고 日人们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연유도 알만하다.

하기야 개고기를 먹는 民族이 地球上에 몇 民族 되지

않는다. 年前에 우리나라에도 上映된 영화 “몬도가네”에도 개고기를 食用으로 하는 场面이 있다. 世上에서 珍貴한 것만 모아 만든 것이 “몬도가네”란 映畫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亦是 珍貴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補身湯이라고 하여 愛用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補身湯을 먹지 않고는 氣運을 못차린다고 하니 食性도 괴이한 民族임에 틀림없다.

여름에는 폐지고기를 먹어야만 肝위를 잊고 氣運을 냈다는 日本과 體力으로 어떤 差異가 있는지 研究해 볼 문제다. 무엇보다 愛犬을 補身湯으로 쓴다는 残忍性과 没人情이 問題인 것이다. 犬種을 改良하고 繁殖시켜 外國에 輸出하는 日本, 全體輸出의 몇% 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할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全國民이 輸出立國에 힘쓰고 있다. 輸出이 愛國이다. 좀 더 愛犬思想을 고취하여 愛犬輸出로 愛國하는 길을 研究해 보아야겠다.

愛犬保護法을 가져보자. 못한 民族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니 愛犬保護法을立法하여 後世에 물려줄 指導者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5동 1049-1013)